

I. 서론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이들이 겪는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내 외국인 성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이나 가족해체현상에 개입할 수 있는 가족통합적 접근인 다문화가족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최연실, 2011), 이와 연관된 전문 인력의 투입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에 확산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상담을 실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이 본격적인 다문화가족상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담보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2015). 다문화가족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등을 통해 시도되어 온 몇 가지 연수프로그램이 개발, 시행(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 최규련, 한재희, 정민자, 강복정, 양다진, 2008; 최규련, 김영희, 한재희, 장진경, 2010;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9; 2011; 한재희, 2012)된 바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가족상담 전문 인력의 적정한 모델 정립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모색도 미흡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본격적이고 체계 잡힌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상담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관련 전문인력이 복지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므로 다문화가족들의 상담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들의 서비스 수요를 볼 때에는 가족관계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등에 대한 상담적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들 중에는 상담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아 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현장 다문화상담자의 준비도가 미흡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상담의 역량을 갖춘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준비된 인력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직율도 높은 편이어서 상담자로서의 기본 수련과 다문화 및 가족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발생한 가운데, 민간영역에서 영리목적으로 다문화가족상담 관련 자격증과 수수료증이 발급되면서, 그러한 자격증과 수수료증만으로는 당사자가 어떤 수준의 교육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 상황은 공공영역을 통한 다문화가족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공공영역의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여성가족부 등의 주관 하에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상

담 인력 양성이 간헐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대체로 단회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가지는 소모성, 비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체계화되고 안정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양성의 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여건이 고려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실천적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는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의 고찰, 다문화가족상담의 성격, 다문화가족상담자의 자질에 관한 선행연구와 다문화가족상담 관련 공공 양성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이원화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 표준안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상담 분야의 전문 인력 공급과 그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면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축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조항은 2013년 3월에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으로서 다문화가족상담을 담당할 기반이 마련되는 데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이 제시되었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관리내용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예산 지원 부분과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 다문화가족상담의 정의 및 성격

다문화가족상담을 정의하는 데 앞서 다문화

〈표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 조항

제13조의 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상담의 배경이 되는 다문화상담의 탄생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다문화상담까지 나아가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상담은 사실상 문화중심적이고, 상담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문화적 맥락에 따른 철학적 기초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Sue, Ivey, & Pederson, 1996). 하지만, 다문화상담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 역동성에 더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한다.

다문화상담은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교차문화상담(cross-cultural counseling)'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교차문화상담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미국에서의 교차문화상담은 주로 백인 상담자가 소수민족 내담자를 상담하는, 즉 '소수민족상담'을 의미하였다(박외숙, 1996). 이에 따라서, '다문화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다문화상담 혹은 교차문화상담의 이론들이 생성되고 미국의 상담학 전공 대학원에서 상담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한재희, 2004).

Tracey, Leong과 Gridden(1986)에 의하면, 다문화상담의 경우 상담에서 호소하는 문제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안계 내담자들은 백인 내담자들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개인적, 정서적인 문제보다는 교육적인 문제, 진로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시안계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치관이나 이주민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문화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나 해결에 대한 접

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차원의 상담은 문화적 역동성을 이해하고 진행되어야 하며, 내담자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배경, 가치관, 가족제도 및 체계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상담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해야 한다. 다문화상담은 그 대상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상담의 내용 또한 문화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김현아, 이자영, 2013). 또한 다문화상담은 상담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적 배경,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담의 이론과 적용기법에 있어서 문화적 유연성에 따른 특성을 적용하는 상담(한재희, 2011)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상담은 "개인의 문화적 차이 및 개인의 심리 내면적 갈등으로 인한 부적응을 돕는 개인내면의 인지, 정서, 행동과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상담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이한 문화 속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억압된 정서, 인지왜곡, 부적응 행동에 대한 상담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심리적 성숙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숙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한재희, 2011, 2012).

한편, 다문화가족상담은 가족상담적 요소와 성격이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가족상담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동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부로 단편적으로 가족상담을 다루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상담을 살펴본 연구들(강기정 외, 2010;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최규련 외, 2008)이 소수 이루어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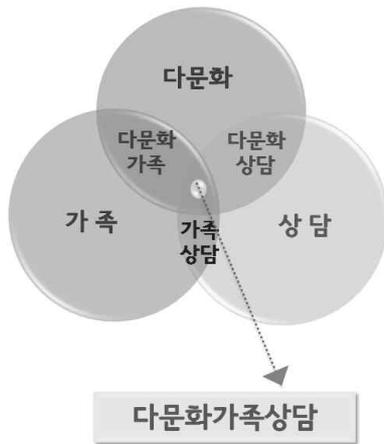
가족상담 및 치료활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호소하는 주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가정과 기법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개인상담 및 치료와 달리, 가족의 기능 회복이나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가족의 의사소통 기술, 가족체계의 경계 만들기 등을 통해 대인관계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담 및 치료활동을 말한다. 개인상담 및 치료는 문제를 호소하는 개인에 초점을 두며, 가족을 다루기는 하지만 단지 가족을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보는데 반해, 가족상담은 가족 그 자체를 한 단위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 개인의 문제보다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 및 체계와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개인상담 및 치료와 큰 차이가 있다. 가족상담이라고 하면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녀양육, 결혼, 가계, 소비, 주거문제, 시간관리 등까지 포함한 문제 중심의 상담과 가족 간 심리상담까지 포함할 수 있다.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의 해결이나 그 밖의 가족상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개인의 변화로 문제가 해결될 소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상담의 중심은 관계와 가족체계의 기능 등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성혜, 성미애, 2010; 정문자, 정혜정, 이선헌, 전영주, 2012).

다문화가족상담이 관련되는 다문화가족, 다문화상담, 가족상담을 고려할 때, 이 개념들을 통합한 다문화가족상담의 개념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성격을 모두 포섭하는 정의가 적절히 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상담은 다문화상담

과 가족상담을 결합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상담에 접근한 몇몇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먼저 최규련 외(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상담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시켜서 건강한 심리적 상태와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루도록 돕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상담은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을 매개로 한 다문화가족의 순기능을 돕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으로서, 다문화가족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담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기정 등(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상담을 “가족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개인 및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담 및 상담프로그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상담을 다문화가족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예방하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상담,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상담에 관한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족상담의 정의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상담은 다문화, 가족, 상담의 세 가지가 중첩된 다문화가족, 다문화상담과 가족상담의



(그림 1) 다문화가족상담의 성격

통합영역으로서(그림 1 참고),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원의 심리적 내면을 강화하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개입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여 다시 제시해 본다면,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생활방식, 가치관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체계론적 관점과 접근방식으로 다문화가족에 개입하는 상담의 과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3. 다문화가족상담자의 정의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그들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상담 현장에 가져오게 되며, 상담자의 문화적 집단과 연관된 세계관은 그들이 행하는 상담 형태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Sue et al., 1996). 즉, 모든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다문화적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상담의 다문화적 관점은 단지 소수 인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담 장면에서 평가와 진단을 정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한재희, 2008). 본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담자는 둔감한 상담자보다 더욱 상담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를 다문화가족상담자에게 적용시킨다면, 다문화가족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배경, 가치관, 가족제도, 체계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

다문화상담자는 다문화상담과 치료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정의될 수 있다(Sue & Torino, 2005). 이들은 내담자의 생활경험 및 문화적 가치와 일관된 상담목표와 양식들을 사용한다. 내담자의 정체성을 개인, 집단, 그리고 보편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조력과정에서 개인적, 문화특수적 전략과 역할을 사용하며, 내담자와 내담자 체계를 평가하고 진단하며, 치료할 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 균형을 맞춘다. 이를 보다 정교화시켜, 다문화상담자가 수행하는 역할 정의를 전통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와 대비시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상담자의 조력과 역할 범위는 전통적인 상담자의 역할에서 더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상담자는 상담에 적절하고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치료기술의 레퍼토리를 확대하여, 교육, 자문, 옹호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상담자나 치료자의 역할을 더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상담자는 다양한 생활경험 및 문화적 차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충고와 제언을 수행한다. 셋째, 다문화상담자는 우리의 정체성이 개인적 독자성, 집단성, 그리고 보편성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넷째, 다문화상담자는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소수집단 마다 그들의 문화에 특수하게 잘 들어맞는 조력 전략이 있어서 이러한 조력 전략

이 사용될 때 그들이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섯째, 다문화상담자는 집단적 현실과 개인적 접근 간에 균형을 맞추으로써 조력관계의 전망을 넓혀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상담자는 내담자와 내담자가 속하는 체계들 사이에서 이중역할을 가정한다(Sue & Sue, 2008,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역, 2011).

다문화상담자에 대한 마지막 역할 정의에서도 제시된 바 있지만, 다문화상담자는 이주민과 국내인 양자 모두에게 상호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관습의 차이를 이해시킴으로써 상호간 소통을 높여 간격을 좁히는 문화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민무숙, 김이선, 이춘아, 이소영, 2009).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상담자는 내국민과 이주민간 중간매개자, 소통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므로, 다문화상담자의 전문성 신장은 다문화 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1).

한편, 가족상담자나 가족치료자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면,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 가족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입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치료자 및 상담자는 주로 가족체계모델에 기반한 개입방식을 사용하여 내담자 가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내담자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 축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김유숙, 2012; 정문자 등, 2012).

다문화가족상담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상담자에 대한 확립된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상담자는 다문화상담자와 가족상담자의

특성과 역량을 결합한 전문가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다문화가족상담자는 다문화, 가족, 상담의 중첩영역으로서 다문화가족, 다문화상담과 가족상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개입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족상담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적 유능성을 지니고 가족원의 심리내면뿐만 아니라 관계 강화 및 가족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전문가로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상담자는 궁극적으로 이주민과 국내인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다문화가족상담자의 자질

다문화가족상담자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상담자와 동일하다고 가정되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다문화상담자를 중심으로 자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상담자의 자질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 문화적 유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첫째, 인간행동, 가치, 편견, 선입견, 개인적 한계 등에 대한 자신의 가정을 인식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둘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셋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와 작업할 때 내담자에게 적절하고 밀접하며 민감한 개입전략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적극적, 발달적, 지속적 과정이다(Sue, 1990; Sue, Arrendondo, & McDavis, 1992).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상담은 한국사회에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상담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e & Sue, 2008, 하혜숙 외 역, 2011). 첫째, 다양한 이민자를 상담할 때 평가, 진단, 상담활동 등에서 이민자의 신념체계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전문가는 외부에서보다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내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셋째, 현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공동체의 연장자를 활용하여 타당하고 합법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이민자와 관련된 이슈가 논의되는 사회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민자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최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이민자가 이주해 와서 타국에서 살고 있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야 하며, 새로운 사회, 경제, 정치, 교육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

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섯째, 정신병리에 대한 진단과 평가과정에서 환경적 영향 요인, 언어적 장벽, 차별과 공격에 대한 잠재적 노출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내담자가 상담이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설블리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할 때는 유능한 통역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상담자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다문화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Augusburger, 1986).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제시한 McPhatter(1997)는 이주자 및 여러 문화적 속성이 다른 집단을 대하는 인력들이 갖추어야 하는 문화적 역량의 개념을 ‘고양된 의식’과 ‘근거에 기반한 지식’, 그리고 ‘경험적 기술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김현아와 이자영(2013)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표 2〉 다문화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세

-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과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설과 가치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세계관을 환영하고 이해해보고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인과 상황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과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힘의 영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한 심리적 이론에 대한 순응의 강요가 아닌 특정한 사람의 삶의 상황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야 한다.
-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특성과 공통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관련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잘못된 가설과 편견 그리고 정보를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다른 사람들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가치를 탐구하고 자신의 전통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의미와 실체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먼저,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적 지식이 필요하다. 다문화 지원 대상자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문화적 특징 및 개인차를 이해하고, 어떠한 지원정책과 정착지원제도가 있는지 법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지원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 도시문화권인지 농촌문화권인지에 따라, 그리고 출신 국가에 따라 자녀양육방식이나 학업, 취업에

〈표 3〉 다문화상담자의 자질

범 주	하 위 영 역	개 념	선 행 연 구
상담 전략	상담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자기노출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충분한 지지와 격려 •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 •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자부심 갖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기정 외(2010) • 김현아, 이자영(2013)
	상담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 대체 의사소통방법으로서의 매체치료 • 자국민이 아닌 한국인 멘토와 연계 • 권위주의적 교육자 역할 지양 • 각별한 비밀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기정 외(2010) • 김현아, 이자영(2013)
다문화 상담자의 자질	대상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문화적 특성 및 개인차 이해 • 다문화 지원 정책 및 법률적 지원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기정 외(2010) • 강기정(2012) • 김현아, 이자영(2013) • 한재희(2004) • McPhatter(1997)
	다문화 상담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상담의 원리를 기초로 한 다문화 상담 • 다문화가족상담 • 다문화 개입프로그램 • 특수 사례에 대한 주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기정(2008) • 강기정 외(2010) • 김현아, 이자영(2013)
	다문화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 없는 태도 • 타문화 이해에 대한 개방성 • 힘든 상황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수(2008) • 김현아, 이자영(2013) • 이성순(2011) • 정지윤(2010) • APA(2017) • Neukrug(2011) • Sue & Sue(2008)
	다문화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접촉경험을 통한 공감의 폭 확대 • 다문화적 의사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기정 외(2010) • 김현아, 이자영(2013)
	상담자 역할과 자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동원성을 포함한 다중역할 • 상담자의 자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Phatter(1997) • 김현아, 이자영(2013)

자료: 김현아, 이자영(2013)을 참고로 구성.

대한 태도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머리를 쓰다듬는 사소한 행동들이 태국의 경우에는 예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둘째, 단순히 상담자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제공, 면접 컨설팅, 한국어 언어교정자 역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역할이나 동행면접 수행, 임금 협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쉼터와 같은 곳에서는 다문화 지원 대상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문화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지원하지 않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동원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 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때 기존에 상담자가 가져야 했던 기본 상담능력이나 자질 외에 다중역할, 적극적인 자원동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다중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소진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종합적으로, 다문화상담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문화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III. 다문화가족상담 관련 공공 양성 교육과정 고찰

다문화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전문인력이 부족함

으로 인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은 여성가족부의 권장 하에 다문화상담을 위한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대체로 '선 선발 후 양성교육'의 형태를 띠었는데, 먼저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선발한 후 이들이 양성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에 현장 업무에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인력수급의 긴급한 필요에 의한 대응방식으로서 장기적으로 다문화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요구가 반영된 양성프로그램들의 내용은 향후 보다 체계화된 양성과정 구성에도 발전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상담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실시해온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평택대학교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 대학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공공영역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상담자 연수 과정을 개설, 시행하여온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양성과정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로 오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양성과정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의해 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되어 오고 있다. 선 선발 후 양성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양성과정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 주관 연구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자격관리, 보수교육 운영규정 및 세부과목에 대한 인(최규련 외, 2010)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방문상담사 양성과정이 지역마다 개설되었다.

2) 양성교육 신청 자격기준

방문상담사들은 면접상담 진행, 방문상담 진행, 집단프로그램 진행, 상담사례관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참석, 수퍼비전 참석, 필요자원 연계, 상담사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문상담사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표 4 참조), 이는 가족상담 인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족 및 상담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단기간의 양성과정에서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양성교육과정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양성교육은 이론교육 총 80시간, 현장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며, 현장실습관련 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수료가 불가하도록 되어있어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운영방식은 다문화가족방문상담사 양성교육 신청자격에 준하여 센터별로 인력을 선발한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이 양성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의 주관 하에 2주간의 숙박 혹은 비숙박 교육으로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일선 센터에서는 인력 선발 시점부터 본 양성교육 이수를 채용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양성교육은 지역별로 각각 다른 교육주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선발기준 등은 명시화 되어 있지 않다. 각 학과목별로 표준화된 교재가 준비되고 강사자격 및 교육주체의 기준 등이 명확해 진다면 보다 표준화된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는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과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총 15시간의 이론 교육과 56시간의 상담기법 훈련, 7시간의 사례 발표 및 수퍼비전 체험, 2시간의 평가 및 자격관리체계 안내, 그리고 20

〈표 4〉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신청 자격기준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양성교육 신청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가족상담관련: 가족상담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전공으로,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가족관계(또는 가족복지), 발달이론(인간발달),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심리검사), 정신건강, 부부상담, 성상담 과목 중 5 과목 이상(15학점)을 이수한 자, 이 중 굵은 글씨는 필수이수과목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방문교육지도사 활동경력자 우대
-----------------------------------	---

〈표 5〉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양성교육 교과과정

항 목	교 육 내 용	시 수
이론(총 15시간)	다문화가족 문제 상담 현황과 특성	3
	방문상담의 이해	3
	방문상담의 과정 및 개입기법	4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2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체계	3
상담기법 훈련(총 56시간)	(1) 방문상담기법 훈련	3
	(2) 다문화가족 문제유형별 개입방법 연습	32
	① 부부갈등 문제	6
	② 폭력 문제	4
	③ 이혼 문제	4
	④ 고부관계 문제	4
	⑤ 자녀양육 문제	6
	⑥ 진로 및 취업 문제	4
	⑦ 알코올 중독 문제	4
	(3) 문제별 개입방법 모의상담 연습	21
사례발표 및 수퍼비전 체험 (7시간)	7	
평가 및 자격관리체계 안내(2시간)	2	
현장실습(20시간)	20	

자료: 최규련 외(2010)

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론보다는 실제 상담 실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보수교육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서 본 교육과 더불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보수교육이다.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의 경우, 기본교육 80시간과 실습을 이수한 후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부터 연 1회 20시간씩 제공되는 초급, 중급, 고급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방문상담사로서의 급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성과정 안이 체계화되어있다. 즉, 성실하게 다문화가족상담에 임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1년에 한 급수씩 향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교육과정은 근무 연수에 따라 급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표 6 참조).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전문인력 양성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인력들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전

〈표 6〉 다문화가족방문상담사 보수교육 내용 및 시간

보수교육 급수	교육 내용	운영방식 및 시간
초 급	개인상담 (3) 집단상담(4) 다문화가족 생애주기 문제(3) 매체상담(3) 가족치료이론 및 실습(기초)(4) 상담현장론(3) 사전과제: 지역사회기관 활용 상담사례	이론, 실습, 토의, 사전과제로 이루어짐 1년 1회 20시간 (하루 6~7시간 강의) 90% 이상 이수 시 수료 인정
	다문화가족상담 과정과 기법 (3) 다문화가족 위기 개입(기초)(4) 지역사회상담(3) 다문화가족상담 세미나(3) 가족치료이론 및 실습(심화)(4) 다문화가족 법과 정책(3) 사전과제: 다문화가족 상담현장 실습	
중 급	다문화가족 위기개입(심화)(3) 다문화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4) 다문화가족상담 수퍼비전(7) 다문화가족문제 세미나(3) 특강: 상담자 소진과 극복(3)	
고 급		

자료: 최규련 외(2010)

문인력 심화교육 교재(초급, 중급)를 개발하여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2a; 2012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들의 재교육을 돕고자 하였다. 이 심화교육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현장 다문화가족상담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표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전문인력 심화교육 내용

구 분	교육 내용
심화교육(초급)	-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상담사례 - 다문화가족 상담실무 이해 - 상담사례관리과정 및 서식적용사례
심화교육(중급)	- 다문화가족상담 과정과 기법 - 다문화가족위기개입 - 다문화상담사례

자료: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2012a; 2012b)

내용을 실무자들과 학자들이 선별해서 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과정 교육 내용 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심화교육교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표 7과 같다. 즉, 다문화가족관련 법률 상담, 상담 실무관련과정 이해, 기법, 위기개입, 사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3.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상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평택대학교는 대학부설 다문화가족센터를 2006년 8월에 설립하여,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대학 및 대학원에 다문화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신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개발 등의 일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의 선도적 대학이다. 이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이 단순한 사회복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상담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을 인지하고,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상담자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간헐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분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실시되어오던 다문화상담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교과목들을 예시한 것이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상담의 기초교육부터 시작하여 가족상담(치료), 여성주의상담, 인지행동, 미술치료, 집단상담, 위기상담 등 매우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중심 접근방법 및 법과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교과과정 중 독특한 것은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 전문상담 과정'이라는

100시간의 연수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여성들을 동일 언어를 쓰는 다문화가족의 상담자 혹은 지원자로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 경우, 상담의 기초적인 기법과 지식부터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100시간의 연수프로그램으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 외의 다른 양성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IV.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1.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첫째, 다문화가족상담사 교육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자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격기준은 타 학회 등의 전문상담사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광범위한 인력풀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관련학회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3급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을 기초과정의 학력자격으로, 2급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을 심화과정의 학력 자격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기초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심화과정까지 이수하여 센터 근무 인

다문화가족상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표 8〉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의 다문화상담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명	대 상	강 의 과 목	비 고	
다문화가족상담 및 치료 연수		- 1강. 가족임파워먼트와 통합적 접근 - 2강과 연습. 가계도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강점 찾기 - 3강과 연습. 가족임파워먼트를 통한 이야기작업	2008. 4. 11.	
다문화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 다문화사회 이해 및 개론 - 다문화가정 상담의 기초 - 다문화사회와 인권 - 결혼이민자의 가정 (성)폭력상담 - 외국근로자 재활상담 - 다문화가족의 갈등 관리 - 다문화가족상담과 독서치료 - 한국사회와 다문화전문상담원의 역할 - 행복한 부부생활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사례 - 전화상담이론과 실제 - 다문화가족상담과 미술치료 - 다문화가정 상담의 실제 - 집단상담리더기출 - 이주여성 상담사례 및 실습	2009. 9.11~11.6 (일주일에 하루, 두 강좌씩 제공)	
		- 자기와 타인탐색(6시간) - 커뮤니케이션기술 인터뷰, 공감, 경청, 지지하기(8) - 사례개념화(8) - 단계별 상담전략(8) -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를 위한 상담기법(8) -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를 위한 상담전략(8) - 상담자윤리(6)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 전문상담 과정	사회복지 석사 과정생 및 졸업생, 한국인 및 다문화여성 대상 (다문화여성들에게 상담자 기본교육을 시키고자 실시됨)	가족이해 및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상담사례 위기상담과 전화상담 집단상담 현장실습	- 다문화가족 문제의 이해 (가족체계론, 여성주의)(8) - 다문화가족 문제의 개입방안 (가족체계론, 여성주의)(8) -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4) - 부부와 성, 시부모상담사례 실습(4) - 다문화관련 법적 상담 및 사례 실습(국적법, 귀 화체류 등)(4) - 다문화가정의 자녀보육에 관한 상담 및 실습(입 신, 출산 포함)(4) - 위기상담(가정폭력, 성폭력) (4) - 전화상담(4) - 집단상담의 원리와 기법(8) - 집단상담실습(감수성훈련)(8)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방문 (4) - 1577-1366 센터방문(4)	2011. 6.13~8.1. (매일 8시간, 매주 월, 수 교육, 총 120시간)

자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9; 2011),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교육개발팀(2008)

력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상담사의 역할이 심리상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족에 대한 이해, 복지 및 관련법제 등의 이해, 다문화역량 등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관련전공 분야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가족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간호학 등으로 넓히며, 필수이수과목으로 상담영역과 가족영역의 기본과목들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영역의 학과목은 현재 대학 정규과정에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기초과정의 교과목에 포함시켜 연수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일반적으로 상담전문가로 불리는 인력들뿐 아니라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 종사자들, 다문화사회전문가, 가족생활교육사 등과 같이 가족, 상담, 다문화 영역의 전문가 집단들이 본 교과과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교육받고 우선적으로 상담 실무에 투입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실무를 통해 가족, 상담 혹은 다문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도 권장할 만한 방법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수강 시 우선권을 주는 것 등의 방법으로 운영방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론과 가족관계 등의 기본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므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문제 중심, 사례중심, 기법중심, 실습과 토

론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대상 선발에서 필수이수교과목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목 구성의 경우 다문화영역, 상담영역, 가족영역 등에 있어서 균형 잡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에 실시된 관련 양성교육의 교과목 예들을 참고하도록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및 교육훈련기관 위탁, 지정에 관해서는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 운영주체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영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사나 성폭력상담사 양성교육의 선례를 통해 볼 때, 교육훈련기관의 기준과 위탁, 지정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의 난립과 무질서 및 과장광고와 고액의 교육비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다문화사회전문가 등의 연수과정은 관련법에 의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규정의 법제화는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없애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기초, 심화)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교육 과정은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문제중심, 사례중심, 기법중심, 그리고 실습과 토론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과목 구성의 경우 다문화영역, 상담영역, 가족영역

등에 있어서 균형 잡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교육과정의 학과목 구성

(1) 기초 및 심화과정 학과목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고, 각 과정별로 80시간의 학과목이수와 20시간의 실습, 총 1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각 과

정별로 10과목씩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목당 수강시간은 4시간에서 12시간까지이다.

각 과정별로 구체적인 학과목의 구성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육과정의 영역이 가족, 상담, 다문화 세 영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고려하였으며, 상당수의 과목이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 걸쳐 내용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방식의 경우에는 이론과 실습, 토론 등이 골고루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표 9〉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기초, 심화)

과정 (과목수)	과목명	시수	영역			강의방식	
			가족	상담	다문화	이론	실습
기초 (10)	다문화가족의 이해	8	*		*	*	*
	다문화가족의 이동과 청소년의 이해	8	*		*	*	*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과 법	8	*		*	*	*
	다문화가족과 임파워먼트	4	*		*	*	*
	집단상담	8		*		*	*
	다문화상담 I	8		*	*	*	*
	다문화가족상담의 기법과 실제	12	*	*	*	*	*
	다문화가족 문제유형별 개입방법 I	12	*	*	*	*	*
	다문화가족상담 사례관리 I	8	*	*	*	*	*
	다문화가족상담 윤리	4	*	*	*	*	*
심화 (10)	다문화사회와 인권	8			*	*	*
	다문화상담 II	8		*	*	*	*
	다문화아동·청소년상담	8	*	*	*	*	*
	다문화가족 법률상담 사례 연구	8	*	*	*	*	*
	다문화가족 위기개입	8	*	*	*	*	*
	다문화가족 문제유형별 개입방법 II	8	*	*	*	*	*
	다문화가족상담 사례관리II	8	*	*	*	*	*
	다문화가족상담 슈퍼비전	8	*	*	*	*	*
	다문화가족 표현예술치료	8	*	*	*	*	*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8	*	*	*	*	*

각 과목별로 해당되는 내용영역과 강의방식이 표 9에 구분되어 표시되도록 하였다.

(2) 교과목의 선후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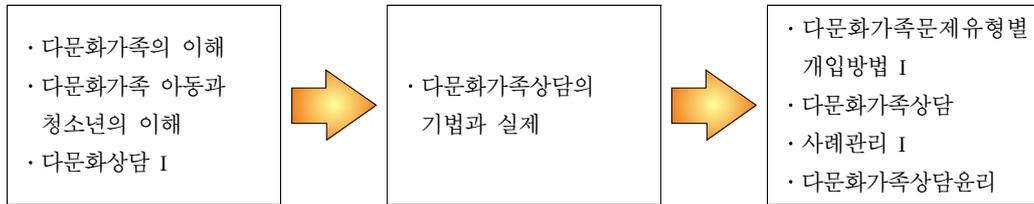
기초 및 심화과정의 학과목 중 특정 학과목을 먼저 수강하고 나서 들어야 하는 학과목이 있으므로, 교과과정 운영 시 이러한 과목의 선후배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보다 기본이 되는 지식을 공급하는 이론적인 과목

이 먼저 오고, 이후에 기법, 실제 개입방법, 사례관리, 슈퍼비전 등의 토론과 실습 위주의 심화 과목이 후에 오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림 2는 바로 이러한 교과목 배열의 흐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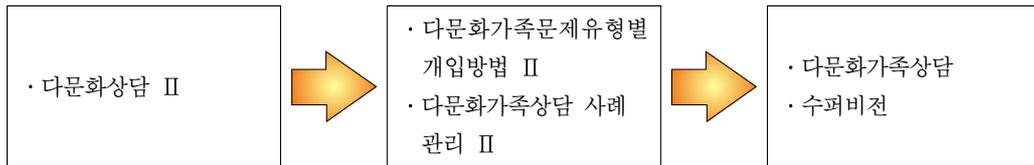
(3) 실습

기초와 심화과정 각각 20시간의 실습을 부여하고 있다. 각 과정별 실습내용은 표 10과

① 기초과정



② 심화과정



(그림 2)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 배치 순서

〈표 10〉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의 실습 세부내용

	기초과정	심화과정
실습내용	· 다문화가족상담 실무 (상담업무보조 및 전화상담, 면접상담 실습) · 다문화가족상담 업무가 진행되는 센터 근무시간을 실습시간으로 봄	· 다문화가족상담 실습 (4회기 이상 지속한 면접상담 1사례 이상)
실습완료 확인방법	· 실습 기관장인이 찍힌 실습보고서 (양성과정 소정양식 사용)	· 양성과정 소정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상담사례 (1회기 축어록 포함) 1사례 제출
실습시점	· 80시간의 기초과정 교육이수 직후부터 3개월 이내	· 기초과정 이수 이후부터 심화과정 교육과정 신청서접수 직전까지
연수시간부여	· 20시간	· 20시간

다문화가족상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표 11〉 기초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

강의명	세부 내용
다문화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다문화가족의 개념, 시각 및 문화적 역량의 제고, 이들 가족의 문제점, 지원정책과 서비스현황과 과제까지 비교적 폭넓은 범주를 다루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8시간으로 2시간은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시각을, 2시간은 다문화가족의 형성된 배경, 2시간은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 2시간은 서비스현황과 과제에 대한 내용을 습득한다.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	다문화가족 내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과목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결국 학교에서의 중도탈락과 비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라는 제도권 안과 밖에서 이들의 적응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과 프로그램을 학습해야 한다. 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시간은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고, 2시간은 문제점과 지원방안을, 2시간은 이들의 역량강화 방안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배운다.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과 법	다문화가족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근거가 되는 이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과 법과의 연관성이 긴밀한 관계성을 볼 때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법들이 갖는 개념을 이해하고 상담 시 관련정책과 법에 대한 정보제시와 적용능력을 갖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4시간 정도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들을 파악하고, 4시간 정도는 다문화가족 관련법들을 숙지하여 다문화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시체계에 대해 습득한다.
다문화가족과 임파워먼트	다문화가족에 대한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들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가족으로의 접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의 긍정성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2시간 정도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루고, 나머지 2시간을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임파워먼트 관련프로그램을 소개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집단상담	다문화상담에 있어 개인상담, 가족상담과 더불어 상담자로서 집단상담의 능력을 갖추는 데 요구되는 내용을 다루며, 소집단을 구성하여 집단을 경험하고 분석해보도록 한다. 집단상담이 갖는 특징과 실제 집단상담에 참여하고 진행해보므로써 집단지도자로서의 유능감을 갖출 수 있다. 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4시간 정도는 집단상담의 이론적 내용을 습득하고, 나머지 4시간은 적용이론과 대상별로 집단상담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집단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적응을 배운다.
다문화상담 I	상담자제가 문화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방향성을 갖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해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자기인식과 다문화상담의 모델들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4시간 정도는 다문화상담의 기초 토대를 다룬다. 즉 상담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과 상담자 자신의 자기인식을 파악하고, 나머지 4시간은 상담자로서 문화적 유능성 함양을 위한 모델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문화가족상담의 기법과 실제	기초과정 수강자들이 상담에 대한 학부수준의 기본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들과 첫 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의 상담 과정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강의이다. 1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6시간 정도는 상담의 기본적 기법들을 배우고 실습하며, 나머지 6시간은 상담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응을 배운다.
다문화가족 문제유형별 개입방법 I	다문화가족상담에서 비교적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그 사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담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하여 준비된 과목이다.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라 할지라도 다문화가족상담 사례들의 경우 그 다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례개념화를 포함한 상담진행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강의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상담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가족상담적 개입방법을 모색해 보는 과목이다. 총 4~5개의 제시된 사례들에 대해 사례개념화 및 개입방법을 조별토론 등의 형식으로 논의해보고, 역할연습도 해봄으로써 수강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상담 사례관리 I	상담자들에게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가족들이 상담에 가지고 오는 표면적 문제들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가족들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담자가족을 집단상담이나 가족생활교육이나 의료 및 복지, 법률서비스 및 각종 지지자원 등과 연결시켜주는 포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담자가족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상담자가 이러한 사례관리적 안목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 일회적 면접상담 등으로 상담에 접수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관리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상담 윤리	다문화가족상담자가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간의 윤리적인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이 기준을 실제사례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상담업무 수행을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지금까지 행해진 다문화가족상담의 예를 보면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어려운 상황에 지나치게 사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담자와의 이중관계가 발생하게 되면서 딜레마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또한 상담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되지 않아 내담자가 차후에 실망감을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상담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과목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2〉 심화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

강의명	세부 내용
다문화사회와 인권	인권에 대한 개념과 규약을 이해하고 특히 다문화가족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이들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과목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상담활동의 중요성도 커진다. 우리나라 외국인의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이며, 순혈주의가 강한 우리사회에서 소수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시간은 인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6시간은 각 대상별 인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적용을 배운다.
다문화상담 II	다문화상담 I 에서 다문화상담과 문화에 대한 기초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다문화상담에서 필요한 기법을 습득하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상담을 하는 데 요구되는 내용과 대상에 따른 상담 문제와 기법 등을 다룬다. 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시간 정도는 상담의 기본적 기법들을 배우고, 나머지 6시간은 토론을 통해 대상자에 따른 상담문제와 기법에 대한 실제적용을 배운다.
다문화아동·청소년 상담	다문화 가정의 아동 혹은 청소년이 주 내담자인 경우에 상담자들이 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다문화가족상담은 점차 다문화여성의 초기적응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다문화가족 또한 가족생활주기 전반에 거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초기적응과는 또 다른 양태를 가진다. 특히 이들 자녀세대의 바람직한 발달과 학교 및 사회생활적응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과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반면, 이 과목은 아동·청소년 상담의 기초에 더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상담의 특성에 맞는 개입방법을 생각해보는 과목이다.
다문화가족 법률상담 사례연구	다문화가족에 있어 법률적 문제는 절박한 가족생활의 단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족을 실제적으로 원조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상담현장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법률적 상담사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고 상담내용과 적용해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상담의 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시간 정도는 법률사례에 대한 소개들을 통해 법률적 지식과 사례유형을 파악하고, 나머지 6시간은 토론을 통해 법률상담 사례에 대한 실제적용을 배운다.
다문화가족 위기개입	상담자들이 위기상담의 기본모형을 다문화가족 위기개입에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일반적인 사례관리나 문제유형별 개입방법에서는 전반적인 사례관리나 상담적 개입의 과정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 과목에서는 위기 시 응급대처 상담방법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다문화가족 문제유형별 개입방법 II	기초과정의 ‘다문화가족 문제유형별 개입방법 I’에 이어서, 문제유형별 개입방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과목이다. 다문화가족상담 내담자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그 사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담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하여 준비된 강의이다. 총 3-4개의 제시된 사례들에 대해 사례개념화 및 개입방법을 조별토론 등의 형식으로 논의해보고, 역할연습도 해봄으로써 수강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상담 사례관리 II	기초과정에 개설된 ‘다문화가족상담 사례관리 I’에 이어서 다문화가족들의 역량 및 기능강화를 위한 상담자들의 내담자 사례관리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다문화가족상담 슈퍼비전	다문화가족상담의 실제 사례들에 대해 슈퍼비전을 통해 다문화가족상담자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화과정 등록 시 일인당 상담사례를 하나씩 제출하도록 하여 이 중 교육적 효과가 큰 사례들 3-4개를 선정하여 전체 사례회의 형식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사례개념화 및 개입전략, 상담프로토콜,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성장이 필요한 측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교육 참가자들도 함께 사례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문화가족 표현예술치료	다양한 표현예술매체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해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언어로만 상담을 진행할 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언어나 문화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표현예술치료기법들이 가지는 장점들은 다문화가족상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가족상담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표현예술치료기법들의 습득은 다문화가족상담을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문제 확인, 설계, 실행,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의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 가족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하게 된다. 8시간으로 배정된 시간 중 4시간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평가에 이르는 내용을 섭렵하고 나머지 4시간은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발표와 토론을 거쳐 프로그램개발과 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용을 배운다.

〈표 13〉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의 구체적 내용

구분	내용
	<p>교육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 및 전공과목이수의 기준을 말하며, 선발기준이란 다수의 지원자가 수강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기준을 말한다.</p> <p>(1) 기초과정의 수강 자격기준 다음 1항부터 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은 기초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①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가족상담관련 분야(상담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등)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학과목 중 3과목(0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 관련 전공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사과목의 판단은 양성 교육과정 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함. ※ 이수학과목: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가족관계(또는 가족복지), 발달이론(인간발달),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심리검사), 정신건강, 부부상담, 성상담 중 3과목(0학점 이상) 이수.</p> <p>②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가족상담관련 분야(상담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등)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1항의 필수 학과목 중 3과목(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p> <p>③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가족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상담실무라 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청소년상담시설, 기타 상담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공 및 사설 기관에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말함.</p> <p>④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 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p> <p>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p>교육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선발기준</p>	<p>(2) 심화과정의 수강 자격기준 다음 1항부터 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은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① 대학원에서 가족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석사학위 3학기 재학 이상인 자로서 다음 학과목 중 3과목(0학점) 이상을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자. ※ 관련 전공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사과목의 판단은 양성 교육과정 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함. ※ 이수학과목: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가족관계(또는 가족복지), 발달이론(인간발달),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심리검사), 정신건강, 부부상담, 성상담 중 3과목(0학점) 이상 이수.</p> <p>②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가족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1항의 필수 학과목 중 3과목(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상담실무라 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청소년상담시설, 기타 상담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공 및 사설 기관에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말함.</p> <p>③ 다문화가족상담 양성과정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의 시점부터 다문화가족상담을 포함한 상담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여기서 상담 실무라 함은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말함.</p> <p>(3)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 교육과정에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선발의 기준은 본 교육과정 이수 후의 실무 활용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았으며, 상담, 가족, 다문화 영역에서의 전문가자격을 입증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우선권을 줌으로써 기존 인력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동일 순위에 있는 지원자들 중 우선선발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성교육과정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p> <p>①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선발의 기준 - 1순위: 현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관련 센터에서 관리 및 행정직을 제외하고 상담, 교육, 지원 등 대민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 2순위: 전문상담사, 가족상담사, 건강가정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정복지사, 다문화사회전문가 등의 관련 자격을 가진 자</p>

〈표 13〉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의 구체적 내용

(계속)

구분	내용
<p>교육 운영주체 및 교육 강사의 자격</p>	<p>교육 운영주체 및 교육 강사의 자격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및 보수교육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다.</p> <p>(1) 교육 운영주체 이 교육과정은 중앙의 핵심기관에 의해 총괄 관리되는 것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유지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향후 수년간 다문화가족상담 실무를 하면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현 센터 근무자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지역에 위탁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한시적으로는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교육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한다.</p> <p>① 제1안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의해 교육과정이 총괄 관리되도록 한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권장하는 이유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의 한 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전담할 경우, 강사의 선정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앙의 한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을 전담하도록 한다.</p> <p>② 제2안 : 각 지역별 1~2개 정도의 거점 대학(원)을 지정하여 학생선발 및 교육운영과 강사선정 등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식은 향후 수년간 현재의 다문화상담 관련 기관들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해야 하는 차선책이다. 교육과정 위탁운영 대학(원)의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4~5인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p> <p>(2) 교육과정 강사 자격 기준 교육의 질은 강사의 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교육과정을 강의할 교육강사의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아래 네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관련 학문을 연구,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의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현장 실무자의 경우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p>교육과정의 연수시간</p>	<p>연수시간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각각 100시간씩으로 한다. 각 과정별 집합교육 8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정: 100시간 (집합교육 80시간 + 실습 20시간) • 심화과정: 100시간 (집합교육 80시간 + 실습 20시간)
<p>교육과정의 연수운영 형태</p>	<p>연수운영 형태는 월~금 매일 교육으로 2주간의 집중교육을 받는 집중형과 일주일에 하루씩 10주간 교육을 받는 분산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주체에 따라 수강자들의 편의에 따라 변형을 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형(2주 프로그램): (8시간 × 5일 = 40시간) × 2주 = 80시간 • 분산형(2개월 프로그램): 8시간 × 10주 = 80시간
<p>수강인원</p>	<p>교육의 질적 유지를 위하여 한 강좌의 적정인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최대 25명을 넘지 않도록 수강인원을 제한한다.</p>
<p>교육과정 연수비용</p>	<p>연수비용은 실비 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서 매년 적정비용을 결정한다.</p>
<p>교육과정의 수료자격</p>	<p>수료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집합교육 출석율 90% 이상과 실습이행을 필수로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개설과목 출석율 90%이상이어야 함. • 실습 이행을 필수로 함.
<p>수료증 발급 명의</p>	<p>수료증은 교육 운영주체의 장의 이름으로 발급된다. 본 교육과정은 자격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수료의 개념으로 본다.</p>
<p>교육 수료자들의 현장 연계성 및 자격 관리</p>	<p>(1) 교육수료자들의 진로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다문화가족상담 전문인력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상담 관련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권고사항을 둘 수 있다. 또한 향후 다문화가족상담 업무를 하면서 이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종사자의 경우 시간여유를 두고 반드시 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다문화가족상담 인력들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상담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2) 수강자 수의 중앙통제 다문화가족상담 전문인력의 교육 후 현장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수의 과정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수강자 수에 대해 전국 및 지역별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무부의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의 예를 통해 볼 때, 보다 양질의 수강자들을 선발할 수 있으며, 양성과정을 이수한 인력들의 진로 등을 고려할 때 권장할만한 방식이다. 적정 수강자 수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 및 일선센터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서 교육과정 개설 수개월 전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3) 보수교육 기초과정 혹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다문화가족상담 관련 센터에서 실무에 종사하게 되면 1년에 1회씩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보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의 통제 하에 각 센터에서 해당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완료하도록 책임성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보수교육은 상담 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교육만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들이 보수교육수강을 희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한다.</p>

같다.

2)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1) 기초과정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초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표 11과 같다.

(2) 심화과정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화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표 12와 같다.

3.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표 13과 같다.

V. 논의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와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한 기초연구에 의해 다문화가족상담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 교육과정안은 다문화가족상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라는 시급한 사안을 해결해야한다는 현실적 필요와, 상담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역량 표준이라는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만들어진 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다문화가족상담과 관련된 인프라가 좀 더 갖추어지게 되면, 상담 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업무내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재 제시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이 보다 정교화되

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상담은 현실적 필요에 비해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다문화가족상담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다문화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나 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 것인지, 둘째, 양성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해 나가는 주체들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셋째, 대학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넷째, 양성 교육과정의 강사 확보와 강의의 질 통제를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다섯째, 양성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과제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과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자격증 발급 단체 및 기관과의 관계 조율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과 이 과정 이수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사안은 기존 다문화상담 관련 자격증(다문화상담사)을 발급하는 기관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권고사항을 두게 된다면, 이러한 기관들의 반발이나 마찰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적 성격을 갖는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나가면, 비공인 혹은 미등록 단체 등에서 발급하던 검증되지 않은 다문화가족상담 관련 자격

중 취득 프로그램이 정리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비교적 전문적인 토대를 가지고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과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지속적 관심을 지녀왔던 학회나 대학 센터 등의 사정은 다소 다르다. 그들 기관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상담 분야의 인력 양성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어 왔고, 또 실제로 전혀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모지였던 이 영역의 현재까지의 발전에는 그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때 불가피하게 맞게 될 이들 기관과의 충돌이나 마찰, 혹은 불협화음은 이와 관련된 부정적 측면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은 이러한 기관들이 정부의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과정을 경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거나 주도권 선점을 위협하는 의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가능한 한 상호 보완적으로 수용하도록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운영주체를 민간 차원으로 확대할 때, 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역사와 축적된 경험을 가진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양성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주체 이전과 규제

현 단계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을 이용하는 단체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상담 양성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안은 아직 미정착 단계에 있는 다문화

가족상담 실시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제반 문제, 즉 강사 선정과 프로그램의 내용 적정성 유지, 효과적인 운영방식 고안 등을 위해 정부 중앙 부처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 기관에서 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양성 과정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는 이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민간 차원의 기관들에게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직하다. 실제로, 현재 가정폭력상담사 양성과정이나 성폭력상담사, 혹은 인터넷중독상담사 등이 그와 같이 정부 부처가 수료증을 발급하지만 실제의 교육운영은 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그러한 교육운영을 책임지고 맡을 기관을 어느 수준에서 선정해야 하는가이다.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에 전문적 토대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기관들이 여기서 그 우선적인 선정 대상이 될 것이다. 질적 통제가 어려운 영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규제하는 가운데 기존의 학회나 대학 수준의 센터 등에 점차적으로 이 기능을 부여해 가면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다문화가족상담 양성 교육기관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검토하고 지역별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3.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양 과정의 수강 자격기준은

차별화되어 있다. 이러한 수강 자격기준은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전문 분야와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수강 진입 조건을 참고하여 개발한 것이다.

기초과정은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가족상담 관련 분야(상담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등) 졸업(예정)자로서 관련 분야 학과목 중 3과목(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자”까지 4단계의 범위에 걸쳐 있다. 또한 심화과정은 “대학원에서 가족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석사학위과정 3학기 재학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학과목 중 3종 3과목(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부터 “다문화가족상담 양성과정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의 시점부터 다문화가족상담을 포함한 상담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까지 3단계의 범위에 걸쳐 있다. 이러한 수강자격기준은 국가자격증검정제도나 여타의 국가관리 유료 프로그램을 참고하면서도 상담 관련 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다.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이 운영은 시작 단계에서는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에 수강을 신청한 경우,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교육과정이 안착하고 난 후에는 대학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은 대부분의 과목이 다문화가족상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이 교과목들은 상당히 특화된 성격을 갖고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학부나 대학원 수준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단상담」은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자격검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학부 전공에서 개설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다문화상담」은 혼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학부 및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의 특수한 관심사에 따라 개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심화과정의 대부분의 교과목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상담 분야로 특화 시킨 것들이어서 학사과정이든 석사과정이지간에 개설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심화과정에 해당될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기초과정의 교과목 경우에는 학부과정이나 상응하는 교육과정에서 이 과목을 수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과목 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상담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들은 중복수강의 낭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초기에는 이러한 학점 감면 방식 등이 혼란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시행이 안정화되고 나서는 충분히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운영의 또 다른 이점은 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시설에서 이러한 교과목 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학생들을 이 분야의 취업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상담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양성 교육과정의 교과목 담당 강사 확보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한다고 할 때,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과연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상담 분야가 학문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연구도 미흡하지만, 관련된 학위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전공자의 배출이 미흡한 수준이다.

교육과정의 질 확보 및 유지에는 강의를 제공할 강사의 수준이라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때, 양성 교육과정의 초기 운영 시에 이 점은 심각하게 고민이 될 수 있을 사안이다. 아쉬운 형편에 우선적으로 상담이나 가족, 다문화 관련 전공자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통한 전문가를 강사로 확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강사 및 강의의 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우선적으로 강사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강사들의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강의 평가 등의 방식을 통해서 강사의 질 통제 및 관리를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5. 양성 교육과정의 교과목 체계화 및 현장 연계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상담 양성과정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과 관련하여, 각각 10개의 과목과 총 100시간의 시수를 제안하였다. 이 과목들은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상담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범위를 구체화시킨 과

목들이다.

이 과목들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강의 자료의 확보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현재 다문화상담과 관련해서는 몇몇 교재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다문화가족상담에 한정하여 개발된 교재는 별로 없고, 또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표준화된 강의계획서나 교재의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는 다문화가족상담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교재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 바로 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이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상담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현장에서 다급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처한 현실에 밀착된 지식과 기법들이 전달되고 다루어짐으로써, 내실 있는 교과목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다문화가족상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므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성이 논의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확대, 개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족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나 교육과정 개발은 때늦은 감이 있고, 따라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의 다소간 한계점은 있을지라도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측면인 교육과정의 개발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피고 본격적인 논의와 후속 연구를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실행하였다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강기정 (201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2), 153-168.
- 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체계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개발보고서.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연구보고서.
- 고성혜, 성미애 (2010). 가족상담 및 치료.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광수 (2008). 다문화사회와 학교상담의 역할과 과제. 서울: 서울교대다문화연구소.
- 김유숙 (2012).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파주: 학지사.
- 김현아, 이자영 (2013). 다문화상담자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다문화 현장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3), 468-484.
- 민무숙, 김이선, 이춘아, 이소영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I): 다문화인력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외숙 (1996).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세미나 자료집*.
-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청소년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0.
- 이성순 (2011).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241-268.
-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국내 다문화연구와 다문화상담 연구의 현황. *상담학연구*, 10(3), 1291-1304.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2a).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전문인력 심화교육(초급).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2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전문인력 심화교육(중급).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2). 가족치료의 이해(제2판). 파주: 학지사.
- 정지윤 (2010).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실태와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2015). 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를 위한 기초연구. *가족과가족치료*, 23(3), 469-498.
- 최규련, 김영희, 한재희, 장진경 (2010).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매뉴얼. 여성가족부.
- 최규련, 한재희, 정민자, 강복정, 양다진 (2008). 다문화가족상담 가이드북. 보건복지가족부.
- 최연실 (2011).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통합적 개선방안 탐색: 가족상담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61-95.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9). 다문화전문상담원 양성과정.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11).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 전문상담과정.
- 평택대학교 특성화 사업단 교육개발팀 (2008). 다문화가족상담 및 치료연수.
- 한재희 (2004). 한국 문화와 목회상담; 한국 문화와 다문화 목회상담. *목회외상담*, 5, 11-42.
- 한재희 (2008). 상담패러다임의 이론과 실제(제2

- 판). 서울: 교육아카데미.
- 한재희 (2011). 한국적 다문화상담. 서울: 학지사.
- 한재희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심화교육(중급).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 Augusburger, D. W. (1986).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McPhatter, A. (1997).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76(1), 255-278.
- Neukrug, E. S. (2011)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ue, D. W. (1990). Culture specific techniques in counseling: A conceptual framework. *Professional Psychology*, 21, 424-433.
- Sue, D. W., Arren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mpetencies/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477-486.
- Sue, D. W., Ivey, A. E., & Pederson, P. B. (1996). *A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herapy*. Lond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ue, D. W., & Sue, D. (2011). 다문화상담: 이론과 실제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역, 원제: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5th edition)). 서울: 학지사. (원저 2008년 발행).
- Sue, D. W., & Torino, G. C. (2005). Racial-cultural competence: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In R. T. Carter (Eds.), *Handbook of racial-cultural psychology and counseling*(pp. 3-18). Hoboken, NJ: Wiley.
- Tracey, T., Leong, F. T. L., & Glidden, C. (1986). Help seeking and problem perception among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331-336.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Guidelines for providers of psychological services to ethnic, linguistic, and culturally diverse populations. Retrieved January 5, 2017, from www.apa.org/pi/guide.html.

- 논문접수일 : 2017년 02월 06일
- 심사시작일 : 2017년 02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03월 08일

Curriculum Development for Training Professionals on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Younshil Choi

Eunsook Cho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Objectives: This study proposed a direction for future professional training of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The authors developed a curriculum based on practical needs and established parameters for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s:** A theoretical review method was used, focusing on legality of professional training for projects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multicultural family counselors' qualities, and curricula of public training cours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Results:** Two tracks of courses were developed (basic/advanced) for professional trainings of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Each track involved a total 100 hours (lecture 80 hours, practicum 20 hours) of training for ten subjects. **Conclusions:** The authors reflected on the issuing of certificates, curriculum foundations, university-level topics to be offered, the securing of lecturers, the systematization of subjects, and connections to the field.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professional training, curriculum*